

“설 이후 하루 2만명”...방역체계 전환 코앞

코로나 대확산 커지는 우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역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한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은 7천630명이다. 역대 일일 최대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7천848명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도 23일 오후 8시 기준 491명으로, 이를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1차 대유행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구는 23일 0시 기

대구 확진 이틀 연속 400명대, 전국 7천여명...역대 두 번째 고위험군 조기진단·치료 집중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적용 임박

준 4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는 요일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3천857명, 4천70명, 5천804명, 6천601명, 6천767명, 7천8명, 7천630명 등 6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다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낮아져 유행의 전국화 양상도 뚜렷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에는 신규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60%대로 떨어졌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설 연휴 등으로 확진자가 향후 2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방역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화가 된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는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새 방역 체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제 조치 후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전체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할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응 단계로 들어서는 사람 △신속확원검사 양성 확진자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확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나 음성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j224@imaeil.com

아이 자가격리 하라는데... 부모 “누가 돌보나” 한숨

자영업자·회사원들 답답함 호소 공동격리자 지정 절차 복잡하고 ‘가족 돌봄 휴가’ 강제 규정 아냐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30) 씨는 최근 다섯 살 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와 아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오전에 혼자 근무하는 임 씨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임 씨는 “대구시에 문의해도 ‘자영업자가 자가격리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대응책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열흘씩이나 가게 문을 닫아둘 수 없어 임시 직원을 채용했지만 인건비가 더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어린이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돌보느라 애를 먹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자녀와 공동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 등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직장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강제가 없어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3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 확진자 비율은 >12월 5째주(12월 26일~1월 1일) 24.3% >1월 1째주(2~8일) 14.7% >1월 2째주(9~15일) 11.7% >1월 3째주(16~18일) 16.8% 등 전체 확진자의 20%에 육박한다.

감염예방방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동거가족이나 보호자가 공동격리자로 지정돼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공동격리자는 밀접 접촉 정도나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각 구·군 보건소가 지정하며, 자가격리자처럼 유급 휴가를 쓰거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문제는 공동격리자 지정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격리자 지정 권한이 각 구·군 보건소에 있다 보니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업무 미숙으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보건소에 연락이 닿았지만, ‘자가격리업을 깔고 담당 공무원 아이디를 입력하면 지원 물품이 갈 것’이라는 원본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불평했다.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유급(최대 3일, 무급 10일)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관련 제도를 아예 모르는 사업장도 적지 않고, 당사자가 앞장서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는 현실이 나온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직원 B씨는 “직원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고, 설명 있다고 해도 자녀 때문에 휴가를 낸다는 말은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털어

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이수현 인턴기자 maysy219219@imaeil.com



코로나 선별진료소 늘어선 줄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7천명대 중반을 기록한 23일 오후 대구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경북지역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치

(가장 많았던 20일과 같아)

23일 오후 8시 기준 234명 확인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세가 가파르다. 23일 오후 8시 기준 경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4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이달 20일과 같은 수를 보였다.

다만 해외감염 사례(23일 21명, 20일 9명)를 제외한 순수 국내감염 사례로는 지난 20일이 더 많았다.

시군별로 포항 63명, 안동 31명, 경산 31명, 경주 33명, 구미 26명, 칠곡 14명, 김천 11명, 고령 5명, 영천·군위 각 4명, 영주·김천·상주 각 3명, 성주·울진 각 2명, 청송·울릉 각 1명씩

체육시설·요양병원 감염 잇따라 22개 시군서 오미크론 변이 나와

확진자가 추가됐다.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226명, 20일 234명, 21일 207명, 22일 215명, 23일 234명 등 5일 연속 2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확진자 가족·지인 접촉자, 자가격리 중 확진, 각종 시설 집단감염 등이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도 속속 늘어 이날 0시 기준 도내 사례 수는 국내감염 276명, 해외유입 89명 등 총 365명이다. 율령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서 모두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나왔다.

포항이 110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 65명, 경주 32명, 구미 29명, 칠곡 26명, 김천 24명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박영재 기자 pyc@imaeil.com

화이자 CEO “1년에 한 번 접종이 이상적”

“4, 5개월 간격 부스터샷 좋지 않아”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가 22일(현지시간)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 CEO는 이스라엘 N12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을 4~5개월마다 매번 맞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바람직하다. 1년에 한 번이면 접종을 설득하기도, 기억하기도 쉽다”고 강조했다.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 진행률, 사망률을 크게 낮춰 주지만, 감염 자체를 방어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간격도 줄이고 있다.

문 집

모 집 기사

도축장 일하실 분

배달 직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아파트

칠성동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대명3동

배달원모집

만촌3동일대

배달원모집

배달

총무·배달원

총무·배달원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

성당지국

배달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총무·배달원

봉화군공공제2022-55호

봉화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34번지 일원의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4. 봉화군수

1. 열람기간: 2022. 1. 24. ~ 2022. 2. 8.(15일말)
2. 열람장소: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석포면사무소
3. 열람도서: 열람장소비치
4.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서식 열람장소에 비치, 홈페이지 게시)
5.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로	면적(m ²)	기종	연장(m)	기종	용도	주요	최소	비고
도로	도로	면적(m ²)	기종	연장(m)	기종	용도	주요	최소	비고
구분	도로	면적(m ²)	기종	연장(m)	기종	용도	주요	최소	비고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기종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구분 <td>면적(m²)</td> <td>기종</td> <td>변경</td> <td>변경 후</td> <td>구성비(%)</td> <td>비고</td>	면적(m ²)	기종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축물·용역·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청 도시교통과(☎054-679-6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열람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공공제2022-1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을 위한 열람공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신동동 359-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김천시 고시 제2019-13호(2019. 2. 28.)]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김천시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 경북 김천시 신동동 359-1번지 일원(면적: 834,791㎡)
2. 제한기간연장 사유
- 사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대상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결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제한대상 범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골간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예외 대상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제시설의 설치
- 이미 확정된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시행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제한고시일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밖에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영조): 2019. 2. 28. ~ 2022. 2. 27. (3년)
- (변경): 2019. 2. 28. ~ 2024. 2. 27. (5년, 2년 연장)
6. 열람기간: 2022. 1. 24. ~ 2022. 2. 7.(15일말)
7. 관계도서: 김천시청 원도심재생과에 비치
8. 열람장소: 김천시청 원도심재생과(☎ 054-420-6485)
9.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김천시 원도심재생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